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통사업자의 이동편의시설 현황 정기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화 〉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034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종 수

목 차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제2212034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교통사업자의 이동편의시설 현황 정기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화(안 제28조 제2항 신설 등)	2
※ 참고자료	9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221203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복기왕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8. 7.
3. 회 부 일 : 2025. 8.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사업자에게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그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관련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관리·감독 기능을 체계화·효율화하기 위하여 교통사업자의 보고 및 자료제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통사업자가 교통행정기관에 정기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현황을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교통사업자의 이동편의시설 현황 정기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화 (안 제28조제2항 신설 등)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교통사업자¹⁾에게 정기적으로 교통행정기관²⁾에 이동편의시설³⁾의 설치·유지·관리 현황을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보고·검사 등) ① 교통행정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u>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u>	제28조(보고·검사 등) ① ----- -----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
<신 설>	② <u>교통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u>

- 1)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궤도운송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5호)
- 2)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6호)
- 3)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歩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

현행	개정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교통행정기관이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신설> 4. 제2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 ④ (생략)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통행정기관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현황을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 -----.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33조(과태료) ①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28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4. 제28조제4항에----- -----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에서는 교통약자⁴⁾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교통수단⁵⁾, 여객시설⁶⁾ 및 도로를 설치 또는 운영하는 교통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법정 기준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 및 유지·관리하도록 하고(제9조·제10조 및 제11조⁷⁾),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의 인허가 단계에서 교통

4)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바.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중 궤도차량을 제외한 시설

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교통수단

2. 여객시설

3. 도로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이동편의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

행정기관으로부터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2조8)).

또한, 현행법에서는 교통행정기관이 필요 시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요구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28조 및 제33조⁹⁾), 개정안은 이를 교통사업자의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여 교통사업자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교통행정기관에 보고 및 제출하게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는 자(이하 “설치·관리자”라 한다)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그 이용을 방해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보도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2조(기준적합성 심사) ①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면허·허가·인가 등을 하는 경우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교통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의 기준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8조(보고·검사 등) ① 교통행정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④ (생략)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이는 임의 제출 방식의 현행 제도의 실효성 및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교통행정기관이 관할 내의 이동편의시설 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어 효과적인 정책 수립·시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봄.

다만, 교통행정기관의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제1호¹⁰⁾에 따른 행정조사의 일환으로서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4조¹¹⁾의 기본 원칙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¹²⁾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10)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11)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⑥ (생략)

1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
2.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보행환경 실태

5.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5의2.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현황이 조사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봄.(참고1. 참조)

나. 관계 기관 등 의견

1) 국토교통부

현행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부는 교통사업자가 관리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매년 자료요청 및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¹³⁾를 공표하고 있어 개정의 실익이 없음.

2)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이동편의시설 현황 보고 의무화는 과도한 인력·시간을 투입하게 하여 중소규모 교통사업자에게 경영부담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어 현행 제도를 활용하여 관리감독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함.

3) 한국해운조합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미설치를 모두 사업자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것은 시설 특성 및 안전문제 등을 고려할 때 불합리하므로 현행 유지가 타당함.

4) 택시운송사업연합

정기적인 보고·자료 제출 의무화는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13)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tmacs.kotsa.or.kr)에서 교통수단·여객시설·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결과 확인 가능

않은 규정으로 법인택시 회사에 행정적·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다수의 법인택시 회사는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소수의 인원이 기존 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부담인 상황에서 정기적인 자료 작성·제출 업무는 과중한 부담임.

5) 한국공항협회

항공교통사업자는 현행법에 따라 교통약자 관련 편의시설 현황을 기재출 중이며 유사 국제기준이나 입법례 부재 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가 적절하다는 의견임.

6)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동편의시설 설치 또는 유지·관리 현황 보고 의무화를 통해 교통약자의 실질적 권리보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함.

문 의 처
02)6788-5584

□ 조사개요

- (목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
 - －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을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 조사, 교통약자의 만족도 등 조사를 시행
- (실시시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
 - * 짝수해: 도 단위, 홀수해: 광역/특별시, 5년 단위: 전국조사
- (조사대상) 8개 특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포함)에 위치한 시설물의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버스차량, 버스정류장, 보행환경의 경우 조사수량, 조사기간, 지자체와 중복조사 등을 고려하여 표본조사를 시행
 - － 표본조사 대상: 버스차량, 버스정류장, 보행환경
 - － 전수조사 대상: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차량, 철도차량, 항공기, 여객선,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사, 철도역사, 공항여객터미널, 여객선터미널(무역항)
 - － 시범조사(Pilot Survey) : 휠체어탑승가능 고속버스, 시외버스 정류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보행환경

자료: 2019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한국교통안전공단(2020.6) p.3, p.21 참조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조사대상 및 방법

구분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11조 관련」	2019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조사대상	조사방법
교통수단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u>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u> - 광역철도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	-8개 특별·광역시내를 운행하는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차량	전수조사 (관리주체의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u>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마을 버스 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u>	-8개 특별·광역시내를 운행하는 시내, 농어촌, 마을버스 -시외버스 (휠체어탑승가능 고속버스)	표본조사 (직접조사) 시범조사 (pilot survey)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철도차량	-철도차량 중 장애인 객차	전수조사 (관리주체의뢰)
	「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u>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u>	-국적 여객항공기	전수조사 (관리주체의뢰)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u>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u>	-8개 특별·광역시에 해당되는(부산 및 인천)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여객선	전수조사 (직접조사)
여객시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u>환승시설</u>	-여객시설(역사, 터미널, 공항 등) 조사시 환승시설을 포함하여 조사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u>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u> - 광역철도의 역사	-8개 특별·광역시에 위치한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사	전수조사 (관리주체의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u>여객자동차터미널</u>	-8개 특별·광역시에 위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수조사 (직접조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u>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u>	-조사대상 여객시설 주변 버스정류장 -8개 특별·광역시에 위치한 시외버스 정류장	표본조사 (직접조사) 시범조사 (pilot survey)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u>철도시설 중 역사</u>	-8개 특별·광역시에 위치한 철도역사	전수조사 (직접조사)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u>공항시설(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정한다)</u>	-8개 특별·광역시에 위치한 공항여객터미널	전수조사 (직접조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u>항만시설 중 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u>	-8개 특별·광역시 무역항에 위치한 여객선터미널	전수조사 (직접조사)
도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u>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u> 「도로법」 제108조에 따라 「도로법」 이 준용되는 도로	-조사대상 여객시설 주변에 위치한 버스정류장 및 노상주차장까지의 보행환경(보도, 지하도, 육교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완료 구간 보행환경	표본조사 (직접조사) 시범조사 (pilot survey)

자료: 2019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한국교통안전공단(2020.6) p.30